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345(본소), 2015가합15453(반소) 판결
[구상금 등 ·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3268(본소), 2016나23275(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345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A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3. 4.

판결 선고 2016. 5.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에게 48,000,000원 및 2016. 5. 1.부터 2016. 12. 31.까지 매월 말일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에게,
 - 가.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 나.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자 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선정자 C, D에게 각 50,614,904원, 선정자 E에게 98,530,1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1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선정자 C, D에게 각 96,628,517원, 선정자 E에게 144,543,7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의 가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294,633,9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1,3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약정금 등에 관한 청구

가.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

1) 인정사실 ① F은 1999. 12. 11.경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8. 10. 25. 사망하였다. 원고는 F의 처이고, 선정자 C, D, E은 F의 자녀이다.

② F이 사망한 후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E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를 위하여 2008. 12. 21.경 피고가 원고를 직위 부장급, 근무방식 재택근무, 채용기간 입사 후 8년간, 급여 월 3,000,000원(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의 조건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1.부터 2014. 12.까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216,000,000원(=3,000,000원×72개월), 상여금 명목으로 총 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 명목으로 총 17,166,760원을 원고를 위하여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피고 전 대표이사 H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약정에 따라 최종지급 다음날인 2015. 1. 1.부터 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2016. 4. 30.까지의 48,000,000원 및 2016. 5. 1.부터 2016. 12. 31.까지 매월 말일 3,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약정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H이 피고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제3자인 원고의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234,366,76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39,019,788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거나, H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 피고 전 대표이사 H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1999. 12.경부터 피고를 설립한 후 9년간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일하여 오던 중 2008. 10. 24. 피고 야유회에 참석한 다음 피고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그 다음날 사망하였으므로, F이 피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F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채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이를 상속받게 된 원고와 선정자들로서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 점, ③ F의 후임으로 피고의 대표이사가 된 H은 다른 이사들과 상의한 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유가족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다른 임·직원들이 6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이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화의 중이었고 F이 사망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를 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H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증여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마치 원고를 피고의 부장으로 채용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꾸미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회계처리 등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약정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와 다른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H이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는 점, 그밖에 F과 피고의 관계, F의 사망 경위와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 과정,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문제 삼게 된 경위 등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H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증여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증여약정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이유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 장례비 반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H이 F의 장례비로 21,247,420원을 지출한 것도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장례비를 반환하거나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례비 중에는 피고 임·직원의 식비와 숙소비, 피고 거래처에 조문답례 서신을 보낸 비용, 주유비 등 피고가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비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장례비 전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F의 장례비를 지출한 행위가 H이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장례비 반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구상금에 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F은 2001. 1. 16.경부터 2004. 2. 27.경까지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에서 '주식회사'의 표시는 이를 생략한다), 부산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04. 8. 2. 화의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4. 10. 22. 화의인가결정(울산지방법원 2004화5호)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4. 11. 6. 확정되었다. 인가된 화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화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파이낸스사, 카드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캐피탈회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공사를 말한다.

마.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채무자회사(피고)의 주주 및 임원과 1 주식회사를 말한다.

2. 화의조건

가.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서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

(생략)

나.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

① 원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말에 원금액의 10%씩 분할변제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말에 원금액의 15%씩 연간 분할변제하며, 2014년 말에 원금액의 25%를 변제한다.

② 기발생이자

이율은 약정이율(단, 약정이율이 연 3%보다 높을 경우에는 연 3%에 의함)로 하고, 2004년 말에 변제한다.

③ 장래발생이자

이율은 연 3%로 하고, 2005년부터 매년 말에 변제한다.

다.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채권자 중 별제권을 포기하고 화의채권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변제조건

① 원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채차할증 상환방식에 의해 분할변제한다.

② 기발생이자

이율은 약정이율(단, 약정이율이 연 5%보다 높을 경우에는 연 5%에 의함)로 하고, 2004년 말에 변제한다.

③ 장래발생이자

이율은 연 5%로 하고, 매년 말에 변제한다.

라. 담보권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화의채권에 대한 변제조건

① 원금

2013. 12. 31. 이후 위의 가, 나, 다의 화의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에 변제한다.

② 기발생이자와 장래발생이자

기발생이자와 장래발생이자는 전액 면제받는다.

3) F의 사망으로 선정자들이 위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게 되자, 선정자들은 2010. 12. 24.경 F의 상속재산 중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40,962,326원, 보험료 환급금 6,290,238원, 저축예금 19,234,764원 합계 66,487,328원(=40,962,326원+6,290,238원+19,234,764원)으로 이 사건 채권자들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2. 15.경 F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선정자들이 F로부터 상속한 피고 발행주식 합계 342,220주(1주당 액면금액 500원)를 압류한 뒤, 2012. 5.경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 합계 133,277,955원(=선정자 C 보유분 28,454,250원+선정자 D 보유분 28,454,250원+선정자 E

보유분 76,369,455원)을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

4) 2004. 12.경 화의조건에 따라 감축되어 피고가 화의채권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화의채권 총액 및 2015. 9. 1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자들의 화의채권 원금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국민은행	3,796,000,000원 및 560,000\$	3,011,693,833원	963,742,028원
부산은행	700,000,000원	198,161,484원	0원
우리은행	250,000,000원	88,913,683원	0원
중소기업은행	1,499,800,000원	631,636,879원	196,917,820원
하나은행	1,200,000,000원	1,200,000,000원	384,000,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	5,096,500,000원	2,816,834,155원	261,100,562원
중소기업진흥공단	400,000,000원	325,000,000원	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 3, 8, 9, 21, 23, 24, 25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3,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9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선정자들의 주장

선정자들은 F로부터 상속받은 퇴직금, 보험료 환급금, 저축예금, 주식 등으로 F의 연대보증채무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주식 보유분 매각액 및 퇴직금 등으로 대위 변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선정자 C, D은 각 50,614,904원, 선정자 E은 98,530,10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F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변제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선정자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배당액의 1/3 및 집행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법리

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가 보증인 등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여전히 화의개시결정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화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 '전액'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화의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보증인 등 구상권자가 대위변제한 범위 안에서 화의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화의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화의절차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 등 구상권자는 그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0933 판결 참조).

라. 판단

선정자들이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위 금융기관 채권자들의 화의채권 원금이 남아있으므로, 위 금융기관 채권자들의 화의채권 전액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추가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선정자들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정자들이 부산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위 금융기관 채권자들의 화의채권이 전액 변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F의 연대보증이 피고에 대한 화의개시 전에 이루어진 이상 선정자들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금 채권도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화의채권에 해당하고, 선정자들의 화의채권은 화의조건 제1의 마항, 제2의 라항에 의하여 '담보권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화의채권'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위 화의조건에 의하면 담보권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화의채권은 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채권 등이 모두 변제된 뒤에야 비로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피고가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화의채권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선정자들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화의채권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정자들의 구상금 지급청구는 구상금액 등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6. 25. F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우리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9100호)을 제기하여 2006. 12. 1. 우리은행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우리은행 등 이 사건 채권자들이 4건의 가압류(청구금액 합계 약 61억 원)를 하였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4. 25. 선정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0. 2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선정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1. 5.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받아 2011. 9. 29.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매각대금은 우리은행 등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3) 원고와 선정자들은 F이 사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1호증의 각 기재, 피고 전 대표이사 H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의 49제일인 2008. 11. 19. 원고에게, 만일 F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된다면 피고가 이를 낙찰 받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피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원고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G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증여 약정이 있었다고 하는 2008. 11. 19.은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2년 전으로, 아직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약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위 일부 증언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11. 9. 22.부터 2015. 8. 31.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31,37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대차 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 피고 전 대표이사 H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채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은 F의 연대보증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선정자들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 점유·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고,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그밖에 F과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F에 대한 예우 및 유가족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H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H의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피고 전 대표이사 H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27. 원고에게 2015. 5. 말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달라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3년 6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의 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피고와 원고 사이의 관계의 기초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우호관계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민법 제613조 제2항 후문이 정하는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행사하여 해지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상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 그렇다면 공동차주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민법 제616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각자(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참조)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2015. 5. 말 이후인 2015. 6. 1.부터 피고가 구하는 2015.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피고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은 월 7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340,000원(=780,000원×3) 및 이에 대하여 위 기간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이현석

판사김유미

별지